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0 - 13 - 083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의 결 일 2020. 3. 11.

주 문

1.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 · 도난 · 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 위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

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접근통제,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의 암호화, 악성프로그램 방지, 출력·복사 시 보호조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포함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나.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할 것

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는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것

라.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할 것

마.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할 것

3. 피심인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2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 유

Ⅰ. 기초 사실

(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IP카메라 정보사이트( )를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대표이사	설립일자	자본금	주요서비스	종업원 수

〈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평균
전체 매출				
관련 매출				
관련없는 매출				

※ 자료 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검·경 등에서 통보한 피심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현장조사(2018.10.31.~11.1.)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IP카메라 정보사이트( )를 2013. 3. 1. 부터 운영하였으며, 2018. 10. 31. 현재 아래와 같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 피심인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 >

구분	항목	수집일	건수
이용자정보	(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주소, 닉네임,펫 종류, 펫 생일, 썸네일 (선택)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성별, 블로그(홈피), 홈피이름		건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개인정보 유출 경과 및 대응

- 2018.10.25.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함
- 2018.10.31. 11시 27분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
- 2018.10.31. 16시 30분경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 중단
- 2018.10.31. 17시 08분 이용자 대상 개별 통지 진행

2) 개인정보 유출 규모

피심인이 운영하는 IP카메라 홈페이지( )는 2018.9.12. 해킹으로 15,854명의 회원정보(아이디, 패스워드, 전화번호, 이메일)가 유출되었고, 그 중 12,215개의 IP카메라 접속정보(IP 카메라 UID, IP, 아이디, 패스워드)가 추가 유출되었다.

구분	유출 항목	건수
이용자	아이디, 패스워드, 전화번호, 이메일	15,854건
IP카메라 접속정보	IP카메라 UID, IP, 아이디, 패스워드	12,215개

3) 유출 경로

- 해커는 피심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취약점을 이용한 SQL-Injection* 공격을 통해 회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 SQL(Structured Query Language) injection: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해 해커가 원하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유출해가는 공격기법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사실 관계

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사실을 지연 신고한 행위

피심인은 2018.10.25. 경찰 수사과정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6일이 경과된 2018.10.31. 11시 27분경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신고하고, 17시 08분부터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피심인은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하여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인지하고 24시간 이내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또한 방통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소명하였다.

나.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1) 피심인은 2013.3.1.부터 홈페이지( )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한 사실이 없다.

2) 피심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은 개인정보가 홈페이지( )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홈페이지 개발 시 시큐어 코딩,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및 그에 따른 개선 조치를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의 보관 및 점검을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작성하여 월1회 이상 감독하지 않았고, 최소 1년 이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마.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 4. 16.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안)사전 통지 및 의견 수렴'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19. 4. 23.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해설서」는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의 '지체 없이'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에 별도로 규정된 정의는 없으나, 관련 판례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및 근거가 없는 한 즉시'로 해석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

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제1호)',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제2호)',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제3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제1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제2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제3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5조제2항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운영(제2호)',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5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감독(제1호)'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13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제3항은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과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세부계획, 고시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보호조치(접근통제,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의 암호화, 악성 프로그램의 방지, 물리적 접근 방지)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제4조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제2호)'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제5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해설서'는 고시 제3조제3항에 대해 내부관리계획은 전사적인 계획 내에서 개인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대표자에게 내부결재 등의 승인을 받아 모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리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고시 제4조제3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 내역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거나 수기로 작성한 관리대장 등에 기록하고 해당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대장 등에는 신청자 정

보, 신청 및 적용 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사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고시 제4조제5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불법적인 접근(인가되지 않은 자가 사용자계정 탈취, 자료유출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접근하는 것을 말함) 및 침해사고(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 방지를 위해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보안 운영체제(Secure OS), 웹방화벽, 로그분석시스템, ACL(Access Control List)을 적용한 네트워크 장비,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라도 접근제한 기능 및 유출 탐지 기능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신규 위협 대응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 적용 및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고시 제4조제9항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보호조치를 하되, 보안대책 마련, 보안기술 마련,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의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취약점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개선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취약점 점검 항목으로 SQL Injection 취약점, CrossSiteScript 취약점, File Upload 및 Download 취약점, ZeroBoard 취약점, Directory Listing 취약점, URL 및 Parameter 변조 등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발표하는 항목을 참조하도록 하고, 기술과 서비스 발전에 따라 시스템 등에 신규 취약점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취약점 점검 및 개선조치 등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시 제5조제1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개인정보의 조회, 정정, 다운로드, 삭제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탐지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불법적인 접속 및 운영, 비정상적인 행위 등 이상 유무의 확인을 위해 ⅰ)식별자(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ID 등), ⅱ)접속일시(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시점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점) 〈년-월-일, 시:분:초〉, ⅲ)접속지(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컴퓨터 또는 서버의 IP 주소 등), ⅳ)수행업무(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가 처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등을 포함하는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반사항

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사실{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을 지연 신고한 행위**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인지하고 6일이 경과하여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행위**

피심인이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포함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고시 제3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 접근통제{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접근권한 기록보관) 피심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권한부여 및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 고시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 설치·운영) 피심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접속한 IP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시도를 탐지하는 기능을 포함한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 고시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조치) 피심인이 홈페이지( )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홈페이지 개발 시 시큐어 코딩,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및 그에 따른 개선 조치를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5호, 고시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의 보관 및 점검{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을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이 개인정보취급자가 DB 및 관리자페이지 접속기록을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지 아니하고, 그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존·관리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 고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사업자 명	위반 내용	법령 근거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지연 신고 통지	§27조의3①	§14조의2①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안 때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신고한 행위
	내부관리계획	§28①1호	§15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포함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행위(고시§3③)
	접근 통제	§28①2호	§15②1호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권한 부여·변경·말소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고시§4③)
	접근 통제	§28①2호	§15②2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침입차단 및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고시§4⑤)
	접근 통제	§28①2호	§15②5호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고시§4⑨)
	접속 기록	§28①3호	§15③1호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작성하여 월1회 이상 감독하지 않고, 최소 1년 이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행위(고시§5①)

Ⅳ.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 위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접근통제,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의 암호화, 악성프로그램 방지, 출력·복사 시 보호조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포함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2)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할 것 3)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는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것 4)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할 것 5)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할 것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제1항,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제1항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3·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9] 및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인 1,000만원을 각 적용한다.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하. 법 제27조의3제1항(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2호의3	1,000	2,000	3,000
너. 법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3호	1,000	2,000	3,0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 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위반행위는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인 300만원을 가중하고,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3개 이상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인 500만원을 가중한다.

< 과태료 부과지침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 >

기준	가중사유	가중비율
위반의 정도	가.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3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50% 이내
	나.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30% 이내
	제3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74조 별표 9 제2호 너목	
	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하지 않은 경우	
	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	
	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라.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마.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 환경, ▲사업규모와 자금사정, ▲개인(위치)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소기업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300인 300만원을 감경하고,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시정이 완료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인 5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위반조문	기준금액	가중	감경	최종 과태료
§27의3①	1,000만원	3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28①1·2·3호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계				**2,000만원**

다.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제2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Ⅵ. 결론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시정명령) 및 제76조제1항제2호의3·제3호(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3월 11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석 진 (인)

위 원 허 욱 (인)

위 원 표 철 수 (인)

위 원 김 창 룡 (인)